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 제 주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2구합2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주식회사 |
| 피 고 | ○○○시장 |
| 변 론 종 결 | 2023. 3. 28.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200,000원, 지방교육세 1,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2. ○○○시 B건물 C호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37,200,000원, 지방교육세 1,24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헌법이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과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입법자로서는 주택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특히 법인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실제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연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해당 법인의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자연인보다 법인을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1주택 취득부터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1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